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1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3일

발 의 자 : 유정희, 김기덕, 김용연, 정재웅,  
오현정, 이광호, 이광성, 최정순,  
김정환, 김광수, 김제리 의원  
(11명)

## 1. 제안 이유

최근 한강사업본부는 ‘건강한 한강’이라는 추진과제 아래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혹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야생 생·동물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토지 사용과 절차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함

## 2. 주요 골자

- 가. 한강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내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의 권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2)

###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야생생물의 보호)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2(야생생물의 보호)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접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접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